

일반직원징계위원회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 70조의 2와 건양학원 정관 제81조에 따른 법인 및 설치학교 일반직원(이하 “직원”이라 한다)의 징계사건을 심의,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일반직원징계위원회(이하 “징계위원회”라 한다.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 이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및 설치학교는 아래와 같다.

1. 법인사무국(사업부포함)
2. 건양대학교(부속병원포함)
3. 건양사이버대학교
4. 건양대학교병설 건양중학교
5. 건양대학교병설 건양고등학교

② 징계위원회에 관하여 다른 법령, 정관 및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원징계위원회규정을 준용한다.

제3조(조직 및 관할)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 5인(위원장 1인 포함)으로 조직한다.

② 징계위원회는 학교법인 건양학원이 유지 경영하는 법인 및 설치학교 일반직원 에 대한 징계사항을 관장하되, 그 위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. 다만, 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 (개정:17.6.14)

③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별도로 구성하되, 위원은 일부위원을 제외하고 교원징계 위원회 위원이 겸임한다.

제4조(징계위원회의 간사 등) ①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.

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 간사와 서기가 겸임하되 임명권자가 임명한다.

제5조(운영세칙)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